



## 중국의 반독점법 추진: 한국기업에 주는 기회와 위협

은 중 학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부연구위원 (jheun@kiep.go.kr, Tel; 3460-1121)

박 현 정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연구원 (hjpark@kiep.go.kr, Tel; 3460-1203)

### 주요 내용

- ▣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는 지난 2006년 6월 7일 반독점법 초안을 원칙적으로 통과시킨다고 발표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중 진출 및 현지 비즈니스에 큰 제약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음.
- ▣ 그러나 반독점법 시행까지는 최소 세 차례에 걸친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고, 국무원 상무회의가 ‘원칙적’ 통과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아직 이익단체간의 이해관계 조율이 끝나지 않아, 2006년 중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 더불어 중국의 반독점법은 외자 기업의 중국 내 M&A와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뿐 아니라, 중국 중앙정부 각 부처 및 지방정부 산하 국유기업의 독점적 행위 또한 제한할 것으로 보여 우리 기업에 위협뿐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 ▣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반독점법 위반으로 치명적인 제재를 당하지 않도록 사내 감사시스템 및 임직원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기회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 최근 중국 정부가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축소 조정 및 진입 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외자기업에 의한 중국기업 M&A는 그 허용폭이 꾸준히 커지고 있으며 외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도 강화되는 추세에 있음.
- ▣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보다 완비된 법제도를 갖춰가는 중국내에서 새로운 시장기회를 찾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함.

## 1. 중국 국무원, 反독점법 원칙적 통과

- 지난 2006년 6월 7일,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는 반독점법 초안을 ‘원칙적으로 통과’ 시킨다고 발표하였음.
- 이에 따라 국무원 법제판공실이 초안에 대한 기술적인 추가 보완작업을 마무리하면 반독점법 초안은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이르면 6월 말부터 심의가 시작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반독점법 제정 움직임에 우리 기업의 대중 진출 및 현지 비즈니스에 큰 제약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음.
- 그러나 중국에서 반독점법이 실제 제정·시행되려면 최소 3차에 걸친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고, 2007년 3월 전인대 전체 회의의 비준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 당장 2006년 하반기부터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물론 전인대 전체 회의를 거치지 않고 상무위원회의 비준만으로 법이 시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반독점법의 경우 그 사안의 중요성과 복잡한 이해관계 조율의 필요성 때문에 전체 회의의 비준을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중국에서 반독점법이 조속히 시행된다 하더라도 그 시점은 2007년 이후일 것으로 전망됨.
- 특히 국무원 상무회의가 ‘원칙적’ 통과라고 밝힌 것은 아직 중국내 이익집단간의 조율이 끝나지 않았음을 내비치는 것으로 2006년 하반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반독점법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 중국이 현재 준비 중인 반독점법은 중앙정부 각 부처 및 지방정부 산하 국유기업의 독과점 행위도 제한할 것으로 보여 국내 이익집단 간 이해관계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반독점법이 국무원을 (원칙적으로나마) 통과한 것이 12년 만의 일이고, 최근 들어 외자기업의 독점적 행위에 대한 중국내 경각심이 높아진 것을 감안하면, 그 어느 때보다 반독점법 시행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임.

## 2. 중국 반독점법 제정 추진 경과

- 중국에서 반독점의 개념은 개혁·개방 실시 직후부터 등장하였으나 반독점법의 본격적인 시행은 여러 기관간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오랫동안 미루어 왔음.
  - 1980년 10월, 국무원이 발표한 「사회주의 경쟁 전개와 보호에 관한 집행 규정<sup>1)</sup>」에 처음으로 독점, 특히 '행정독점'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김.
  - 행정독점이란 중앙정부의 각 부처 혹은 지방정부가 행정권한을 이용해 산하 국유기업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타 부문, 타 지역 경쟁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뜻함.
  - 1987년에는 국무원 법제국 산하에 반독점법 초안 마련을 위한 소조가 설립되고 여기서 「독점과 부당경쟁 금지 집행조례 초안<sup>2)</sup>」을 작성하였음.
  - 그러나 독점과 부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상위 법률 제정을 심의한 1993년 제8기 3차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부당경쟁방지법」만을 입법·시행하고, 「반독점법」은 추후 재론하기로 하면서 입법을 유보하였음.
- 1993년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994년부터 국가경제무역위원회(현 상무부)와 국가공상총국이 「반독점법」 초안 작성에 들어갔으나, 정부 각 부문의 이견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10년이 지난 2004년 3월에야 국무원에 심의용 초안을 제출하였음.
- 최근 국무원이 원칙적 통과를 선언한 초안은 그 전문(全文)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2004년 3월 위 두 기관이 작성해 제출한 심의용 초안에 추가수정을 가한 것으로 판단됨.
  - 2004년 3월의 심의용 초안에서는 반독점법의 집행기구를 상무부내에 둘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현재 국무원은 국무원 산하에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립하여 이로 하여금 반독점법을 집행토록 하는 안을 동시에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짐.
- 1994년 이후 10년 동안 「반독점법」이 표류했던 것은 독점금지정책이 '대기업 육성 정책'과 마찰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와 전신, 전력, 우정, 항공, 철도 등 일부 국가독점산업 기득권층의 반대에 따른 것이었음.

1) 关于开展和保护社会主义竞争的暂行规定

2) 反对垄断和不正当竞争暂行条例草案

- 물론 위와 같은 우려와 기득권층의 반대는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며 이것이 2006년 하반기 진행될 상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최근 들어 외자기업, 특히 대형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중국시장을 공략하며, 중국 국내기업을 M&A하는 현상에 대한 중국내 경각심이 높아져 반독점법 추진은 그 어느 때보다 큰 힘을 받고 있음.
- 중국은 지난 20여 년간 반독점법 제정 논쟁을 거치면서 「부당경쟁방지법」을 비롯해 여러 경쟁 관련 법을 부분적으로 제정·시행해왔으나 그 내용이 모호하거나 집행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그간 독점금지과 시장경쟁 촉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음.
- 현재 반독점 관련 주요 기관은 국가공상총국의 공정거래국, 발전개혁위원회, 그리고 상무부의 반독점조사판공실이며, 이밖에 10여 개의 서로 다른 기관이 유관 규정 및 조례 집행을 담당하고 있음.
-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최근 중국정부는 독점적 행위를 제한하는 법 규정을 통일적으로 정리·강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기관을 설립한다는 취지에서 반독점법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2006년 6월 7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중국의 시장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방에 따른 세계적인 경쟁이 중국내에서 벌어지고 있어 이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반독점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음.

### 3. 중국 반독점법의 제재대상: 국유기업 vs. 외자기업

- 중국의 반독점법은 이른바 행정독점 규제를 둘러싼 중국내 이익집단간의 의견조율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금껏 미루어져 오다, 최근 외자기업의 중국 진입이 본격화된 것에 대한 방어적 차원에서 새롭게 필요성이 인식되어 본격화되고 있음.
- 그런 만큼 현재 준비 중인 중국 반독점법의 잠재적 제재대상은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음.
- 하나는 중앙정부 각 부처 및 지방정부 산하의 독점적 국유기업이며 다른 하나는 중국 진출을

본격화하는 대형 외자기업들임.

## 가. 국내 국유기업의 독점행위에 대한 제재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반독점법 제정의 역사에서 가장 주된 제재대상은 중앙정부 각 부처 및 지방정부가 행정권한을 이용해 산하 국유기업이 독점적 이윤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행정독점이었음.
- 다시 말해 중국의 오랜 반독점법 논의에서 주요 제재대상은 국내 국유기업이었음.
- 국내 국유기업의 독점에 대한 타파 필요성은 중국이 시장화 개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것임.
- 실제로 중국은 중앙정부의 각 부문과 지방정부가 이익집단(전자를 条, 후자를 块라고 함)을 형성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부문 혹은 지역에 대한 배타성과 보호주의가 심각해 전국에 걸친 통일적인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음.
- 따라서 시장화 개혁과정에서 정부 각 부문과 지방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행정독점에 대한 타파 혹은 완화는 필수적인 과업으로 인식돼 왔음.
- 다만 이를 위해서는 각 이익집단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은 까닭에 반독점법 추진이 큰 진척을 이루지 못했던 것임.
- 한편 최근 2~3년 사이 중국이 반독점법 추진을 본격화하자 외국정부와 다국적기업들은 중국정부가 외자기업을 제한하기 위한 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해왔는데, 이에 대해 중국측은 현재 준비 중인 반독점법의 주된 제재대상은 행정독점과 연루된 국내 국유기업이라며 외국정부와 다국적기업의 우려를 희석시키려 하고 있음.
- 그간의 추진경과로 볼 때 중국의 위와 같은 주장에 일정 정도 근거가 없지 않으나,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반독점법 제정 추진이 갑자기 활발해진 것은 다국적기업의 중국내 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더해졌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 더불어 중국이 반독점법을 통해 행정독점을 규제하려 하는 것은 선진국으로부터의 '시장경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실제로 EU는 지난 2004년 6월 중국내 행정독점을 이유로 들어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거부한 바 있음.

## 나. 외자기업의 독점 행위에 대한 제재

- 최근 외자기업이 중국 진출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시장점유율 확대, 독자(獨資)기업화, 중국기업 M&A, 지식재산권의 남용에 대한 중국내 경각심이 높아진 것도 반독점법 추진을 서두르는 계기가 된 만큼, 외자기업(특히 대형 다국적기업)은 향후 중국 반독점법의 또 하나의 주된 제재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경공업, 화학, 의약, 기계, 전자 등 산업에서 외자기업의 중국내 시장점유율은 이미 30%에 달함.
  - MS 운영체제의 시장 점유율은 95%, Intel의 CPU 시장 점유율은 85%, CISCO의 변환기 시장 점유율은 60%임.
- 또한 많은 외자기업은 합자형태로 중국시장에 진입한 뒤, 중국측 파트너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일방적인 증자를 통해 독자기업화해왔음.
  - 과거보다 완화된(특히 WTO 가입 이후) 법 규정 덕택에 처음부터 독자기업형태로 진입하는 경우도 많아졌음. 2005년 설립된 외자기업 중 독자기업의 비중은 71.2%에 달함.
  - 이처럼 많은 기업이 이른바 '중·외 합자기업'에서 '순수 외국기업'으로 진화함에 따라 중국내에 보호주의적 정서가 촉발되었음.
- 더불어 최근 2~3년간 다국적기업들은 중국내 여러 산업(특히 기계장비, 맥주, 음식료, 금융 서비스)의 우량 중국기업들을 M&A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음.
  - 이에 따라 중국내에는 '민족산업 발전의 맹아가 외자 인수합병에 의해 뿌리째 뽑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와 보호주의의 목소리가 높아졌음.

- 외자기업에 의한 잇따른 지식재산권 청구도 중국으로 하여금 반독점법 제정을 서두르게 하는 배경이 되어 왔음.
- 일례로 2003년 중국 DVD 플레이어 생산업체들이 일본·미국 업체가 연대하여 결성한 이른바 6C의 공략에 못 이겨 30억 위안을 특허료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중국 국내브랜드의 수출경쟁력이 급감했던 바 있음.
- 이어 오토바이, MP3 플레이어, 디지털카메라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식재산권 공략이 잇따르면서 중국내에서는 이를 저지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됨.
- 중국 과학기술부의 용역과제로 안후이대학, 상하이교통대학 교수 등이 지난 2005년 11월 작성·보고한 「중국내 다국적기업의 지식재산권 남용 상황과 그에 대한 대책 연구보고서」<sup>3)</sup>는 다국적기업들은 최근 중국내 특허 신청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지식재산권 획득에 적극적이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기업들을 포위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현재의 「부당경쟁방지법」 등으로는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다국적기업의 횡포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반독점법」 도입을 촉구하였음.
- 따라서 반독점법이 정식 제정·시행되면 외자기업의 중국기업 M&A와 지식재산권을 수단으로 한 중국시장 공략 등에 일정 정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언론은 이번에 통과된 반독점법을 「M&A법」이라고 부를 만큼, 외자기업에 의한 중국기업 M&A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최근 외자에 의한 중국기업 M&A가 대부분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동의와 유치 노력하에 이루어진 협조적 M&A였음을 감안하면, 외자에 의한 중국기업 M&A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동북3성과 같이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나 재원조달이 어려운 곳은 외자에 의한 중국기업 M&A를 지속적으로 권장할 것으로 전망됨.
- 물론 반독점법이 시행되면 법적·정서적 이유로 인해 중국기업을 M&A하려는 외자기업의 협상력은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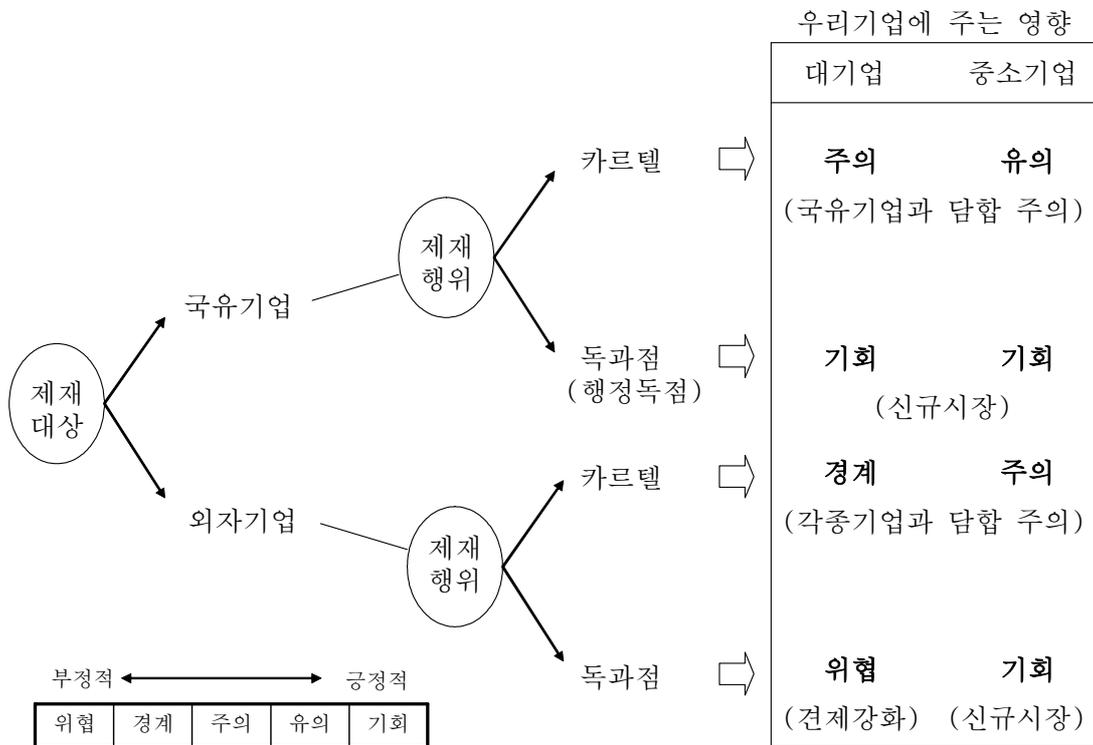
3) 在中国跨国公司知识产权滥用情况及其对策研究报告

- 지식재산권의 경우, 특정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은 초대형 다국적기업(예컨대 MS, Intel, CISCO, Kodak 등)의 경우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나, 외자기업의 일반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자체가 약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반독점법 제정과 별개로, 최근 중국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수위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음.

#### 4. 반독점법 성격에 따른 기회와 위협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최근 중국의 반독점법 제정 추진은 대내적 이유(지역 분절적 시장 극복과 시장경쟁 활성화)와 대외적 이유(외자기업에 의한 중국시장 잠식 제어)가 혼재된 상태에서 촉발된 것이며, 반독점법을 통해 제재할 수 있는 잠재적인 대상은 두 부류, 즉 중국의 국유기업과 외자기업임.
- 그 중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릴 것인지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중 진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임.
- 중국내 행정독점을 규제하는 쪽으로 법 집행이 될 경우, 보다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어 한국기업의 대중 진출기회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음.
- 반독점법 시행으로 중앙정부 각 부처 및 지방정부의 보호주의와 배타성이 완화될 경우, 중국 전국시장의 통일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그에 따라 우리 기업이 추구할 수 있는 시장기회도 늘어날 것임.
- 반대로 외자기업의 중국내 활동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법 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 기업들의 중국 내 비즈니스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중국 반독점법 제정의 파급효과는 그 법이 제재하고자 하는 주요 대상이 누구(국유기업 vs. 외자기업)인가 뿐 아니라, 어떤 종류의 행위(카르텔 vs. 독과점)를 주로 제재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임.

그림 1. 중국 반독점법 성격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 현재 국무원 법제판공실에 계류 중인 반독점법 초안의 전문(全文)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미국 및 유럽 국가의 반독점법과 유사하게 △ 카르텔 금지 △ 독과점 행위 제한을 포괄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중국 반독점법의 실제 집행이 카르텔 금지와 독과점 행위 제한 중 어느 것에 치중할지는 아직 미지수임.
- 법조문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반독점법의 실제 시행에 있어 국가간, 시공간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향후 중국이 어떤 성격의 반독점법을 제정, 시행할지는 앞으로 관찰대상임.
- 미국의 셔먼 법(Sherman Act)은 카르텔(Cartel: 가격담합, 시장분할, 고객분할, 생산량조율, 입찰조작 등)을 금지하는 섹션 1과 독과점(Monopoly)을 제한하는 섹션 2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시 정부 들어 독과점보다는 카르텔을 막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평가임.

- 반면 현 부시 정부와 유사한 법체계를 갖고 있던 과거 클린턴 정부나 현재 유럽국가의 경우에는 카르텔 금지뿐 아니라 독과점 제한에 있어 보다 적극적임.
- 만약 중국의 반독점법 시행이 독과점 행위 제한에 무게중심을 둔다면 외자기업 중에서는 초 대형 다국적기업이 우선적인 제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일부 대형 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우리 기업에 미치는 효과는 부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점유율이 높은 분야는 CDMA 단말기(삼성과 LG가 각각 31.16%와 18.71%를 차지), LCD 모니터(삼성이 약 29%를 차지), 일부 공작기계(두산기계가 해당 시장에서 22.8%의 점유율을 기록) 등에 그침.<sup>4)</sup>
- 이밖에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우리 기업이 10% 미만의 중국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반독점법이 독과점 행위 제한에 중점을 둘 경우 우리 기업의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중국 내수시장 1위 전략을 펴고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휴대폰, 액정 TV, 플라스마 TV, 고가 에어컨의 시장점유율도 각각 8%, 7.03%, 7.58%, 4.2%에 그침.<sup>5)</sup>
- 그런데 만약 중국의 반독점법이 카르텔 금지에 무게중심을 둔다면 중국내 시장 점유율이 그리 높지 않은 우리 기업의 경우에도 크게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 경우 동종 기업과 제품의 가격을 담합한다든지, 시장이나 고객을 서로 분할한다든지, 생산량을 조율한다든지, 입찰에서 담합하는 등의 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임.
- 또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매개로 하여 외자기업간에 연대를 맺고 중국기업에 대해 배타적 행위를 한다거나 공세적 입장을 취하는 것 등에 있어 종전보다 훨씬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하이테크 기업인 경우, 기업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 카르텔 가담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4) AI-工程机械分析及预测

5) 中怡康时代市场研究公司调查数据, MII-市场分析及预测

## 5. 한국기업에 주는 시사점

- 중국이 최근 반독점법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중국내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임.
- 그러나 일부 국내 언론보도와 달리 2006년 중 반독점법이 시행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음.
- ‘원칙적’ 통과라는 표현이 암시하듯, 아직 중국내 많은 이익집단간의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만큼 실제 시행시기는 늦춰질 것으로 전망됨.
- 그런 만큼 국내기업들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음.
- 하지만 현재 우리 기업들의 반독점법에 대한 각성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 2006년 3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DRAM 카르텔 가담 혐의로 각각 3억 달러와 1억 8,500억 달러의 거액의 벌금(미국 반독점법 시행 110년 역사에서 벌금 금액으로 각각 2위와 4위에 해당)을 물고 임원이 구속된 사건은 우리 기업의 반독점법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을 보여줌.
- 이는 경쟁보다는 협의를 통한 조율을 우선시해온 아시아적 관행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중국 역시 아시아적 관행에 익숙한 나라이지만, 최근 반독점법의 집행추세가 자국기업보다는 외국기업에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추세인 것을 감안하면, 중국에서 반독점법이 시행되면 중국에서도 우리 기업이 안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대중 진출 우리 기업들은 반독점법 위반으로 인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 않기 위한 사내 감사시스템 및 임직원 교육프로그램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반독점법 시행이 우리 기업에 반드시 위협이 되는 일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중국내 시장기회가 더욱 크게 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최근 들어 중국정부가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축소 조정 및 진입 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에서는 WTO 가입 양허안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비록 2006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를 정점으로 하여 외자기업에 대한 경각심과 보호주의가 중국 내에서 높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중국내 비즈니스 활동에 있어 외자기업의 운신 폭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넓어져 온 것이 사실임.
- 일례로 반독점법 제정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서도, 외자기업의 중국기업 M&A에 대한 허용폭은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또 외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남용에 관한 사회적 문제 제기가 있는 가운데서도 중국내에서 외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날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 다시 말해 중국의 반독점법 제정 추진이 비록 외자기업에 대한 경각심과 중국내 보호주의에 의해 더욱 가속화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중국이 외자기업에 대해 자국시장을 닫아걸려는 증거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임.
- 오히려 중국의 최근 움직임은 개방을 지속해가되 그에 따른 부작용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보다 세련된 시장경제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2006년부터 시행 중인 제11차 5개년 계획도 사회주의 시장경제 법률체계의 정비를 2010년까지 달성할 주요 과업 중 하나로 꼽고 있음.
-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중국정부의 정책지향을 한쪽에서만 바라보고 그에 따른 충격과 위협을 과장하지 말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관찰하여 새로이 생겨나는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려 노력해야 할 것임.